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혼인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설(박정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3

I. 개요

1.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12.
- (3) 회 부 일 : 2024. 7.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졌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은 6298만원이며 그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비용으로 139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혼인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설(박정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박정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정태호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신설>	☐ <u>특별소득공제에 혼인소득공제 추가</u> (제52조)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근로소득자 ○ 공제기간: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공제형태: <u>소득공제</u> ○ 공제금액: <u>1천만원</u> ○ 적용기간: <u>2025년 1월 1일 이후</u> 혼인 신고 분	☐ <u>특별세액공제에 혼인세액공제 추가</u> (제52조) ○ 공제대상: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기간: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공제형태: <u>세액공제</u> ○ 공제금액: <u>300만원</u> ○ 적용기간: <u>2025년 1월 1일 이후</u> 혼인 신고 분	☐ <u>결혼세액공제 신설</u> (제92조) ○ 공제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기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형태: <u>세액공제</u> ○ 공제금액: <u>50만원</u> ○ 적용기간: <u>2026년 12월 31일 이전</u> 혼인신고 분

* 박정하의원안 2024. 7. 12. 제출(의안번호 1680), 안도걸의원안 2024. 7. 15. 제출(의안번호 177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4건의 개정안은 혼인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박정하의원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안도결의원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의 거주자가 혼인을 한 경우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를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비교]

구 분	박정하의원안	안도결의원안	정부안·정태호의원안
①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거주자
② 공제대상 비용	거주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혼인비용	거주자 본인의 혼인비용	거주자 본인에 한하여 1회
③ 공제 한도	1,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원
④ 공제 방식	소득공제 (공제액: 1천만원)	세액공제 (공제액: 300만원)	세액공제 (공제액: 50만원)

□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 3,657건을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6년 5.5건에서 2023년 3.8건으로 약 31% 감소하였음.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혼인건수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조혼인율	5.5	5.2	5.0	4.7	4.2	3.8	3.7	3.8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이와 같은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출생아 수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합계출산율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 이에 4건의 개정안은 혼인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혼인과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으로, 혼인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혼인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9.7	35.4	22.0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1.0	13.4	7.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6.6	4.7	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0.7	9.3	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6	11.3	11.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8	1.1	0.6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9.6	8.4	11.2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0	0.6	1.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7	15.2	23.3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지표누리)

□ 다만, 4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혼인을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결혼정보 전문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9,748만원으로 2023년 대비 3,30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정안에 따른 1인 기준 공제액은 평균 결혼비용의 0.17%(정부안 및 정태호의원안), 1.00%(안도결의원안), 1.51%(박정하의원안)¹⁾ 정도의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혼인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4건의 개정안에 따른 혼인관련 공제는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1회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장기적·계속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혼인의 결정에 있어 동 제도의 신설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건의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 혼인이 출생의 전단계로 인식되기는 하나, 혼인과 출산을 독립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는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1) 세액공제액 300만원(안도결의원안)은 2024년 평균 결혼비용의 1.00%에 해당하고, 소득공제액 1,000만원(박정하의원안)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구간을 가정하더라도 450만원 수준으로 평균 결혼비용의 1.51%에 해당함(다만, 박정하의원안과 안도결의원안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공제액 및 평균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배가 됨). 또한, 세액공제액 50만원(정부안)은 2024년 평균 결혼비용의 0.17%에 해당하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는 2024년 평균 결혼비용의 0.34%에 해당함.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전체	30.5	32.0	34.7
청년	46.4	50.5	53.5

자료: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통계청, 2023. 8. 28.

또한, 청년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²⁾, 고용·소득 불안정과 아울러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족,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 관련 공제제도의 신설만으로는 최근의 비혼·저출생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중 연도별 추이]

(단위: %)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결혼비용	46.4	65.8	53.2	51.4	41.9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12.5	9.1	8.6	13.9	12.6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18.8	9.2	16.4	12.9	25.2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3.7	9.1	11.8	12.3	18.2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7.5	6.3	8.5	9.5	1.2
기타	1.1	0.6	1.5	-	0.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p.59

셋째, 혼인소득공제의 경우 既 시행되었다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100만

2) 청년(15세~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46.7% → 2018년 47.1% → 2019년 47.8% → 2020년 46.4% → 2021년 47.9% → 2022년 49.8% → 2023년 49.4%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가 시행³⁾된 바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특별 공제를 간소화하는 차원⁴⁾에서 2008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60

3) 「소득세법」 [제88차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5호]

제52조(특별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4) 이에 더해 고소득자의 혼인율이 높아 고소득자에 많은 혜택이 귀착된다는 점도 감안되었음.